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 5. 11 선고 2021가단103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20. 9. 14. 접수 제9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정지원

별지1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1. 경남 함양군 C
[도로명주소] 경남 함양군 D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1층 주택
1층 39.67㎡
1층 13.22㎡. 끝.

별지2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보증과 소외 금융기관의 대출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용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E을 경영하던 소외 B(이하 위 B이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B이 소외 F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 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F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B은 아래 <표2> 와 같이 F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G	100,000,000	2018. 5. 30.	2020. 5. 28.	기업일반 자금대출	F은행 H종합금융센터

<표2. 대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G	100,000,000	F은행 H종합금융센터	2018. 5. 30.	100,000,000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그런데 E을 경영하던 위 B의 2020. 5. 26.경 부실(이자연체등)로 인해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F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과 같이 F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B로부터 그 대위변제 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표3.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구상합계액
1	G	2020. 10. 15.	100,000,000	2,683,278	102,683,278
합계			100,000,000	2,683,278	102,683,278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위 B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아래 <표4> 와 같습니다.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

기 간	이율(연)	비 고
대위변제일로부터 - 현재까지	8%	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

3. 미수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 35조 및 원고와 위 B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제 4조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

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율과 위약금은 아래 <표5>와 같습니다.

<표5. 지연손해금율 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대상기간	일수	율율	미수금액
1	G	100,000,000	2020.05.29.-2020.10.14	139	1.7	647,390
합계						647,390

4. 법적절차비용

원고와 위 B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위 B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B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원고가 위 B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491,749원이 됩니다.

5. 구상채권 합계

그러므로 위 B은 위 대위변제금 102,683,278원과 위 미수위약금 647,390원, 위 법적절차비용 491,749원등 합계금 103,822,417원(위 대위변제금 102,683,278원 + 위 미수위약금 647,390원 + 위 법적절차비용 491,749원)과 위 대위변제금 102,683,278원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신용보증기금법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릅니다.

6. 지급명령

원고는 위 구상금의 채권과 관련하여 위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차전 46978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위 지급명령은 2020. 11. 17. 인용되어 그 무렵경 확정되었습니다.

7. 소외 B과 피고간 사해행위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를 경영하던 위 B의 신용보증 사고로 인하여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위 B은 위 신용보증사고 직후인 2020. 9. 9.경 자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인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9.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양동기소 2020. 9. 14. 접수 제 90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나.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담보가치 있는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그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위 B이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등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역시 원고등을 해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여 계약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